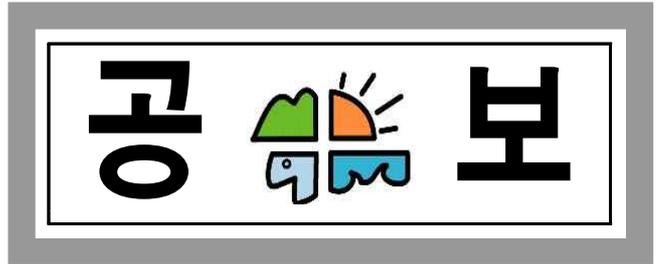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51호 2021년 10월 8일(금)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6

입법예고

-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속초시고시 제2021-119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속 초 시 장

-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조서: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교통 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결 초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	1,152	교동 668-52도 소로3-82	교동 780-1도 중로1-1	일반 도로	1969.3.25 (강고제69-2119호)	
변경	중로	1	4	20	보조간선	1,152	교동 668-52도 소로3-82	교동 780-353도 중로1-1	일반 도로	1969.3.25 (강고제69-2119호)	
기정	중로	1	16	20	보조간선	2,502	조양 773-2답 대로1-1	도문 2118-2답 중로1-5	일반 도로	1992.10.9 (강고제92-113호)	
변경	중로	1	16	20	보조간선	2,502	조양 773답 대로1-1	도문 2118답 중로1-5	일반 도로	1992.10.9 (강고제92-113호)	
기정	중로	3	52	12	집산도로	196	노학 산270-2 중로1-9	노학 972-141	일반 도로	2015.1.16 (강고제2015-11호)	
변경	중로	3	64	12	집산도로	196	노학 산270-12 중로1-9	노학 972-141	일반 도로	2015.1.16 (강고제2015-11호)	
기정	중로	3	61	12	보조간선	694	조양 산90-1임 중로3-35	대포 53-4도 중로2-38	일반 도로	2015.10.16 (속고제2015-48호)	
변경	중로	3	61	12	보조간선	714	조양 산90-1임 중로3-35	대포 53-4도 중로2-38	일반 도로	2015.10.16 (속고제2015-4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	211	영랑 149-2대 대로3-4	영랑 162-7도 중로1-2	일반 도로	1969.3.25 (강고제2119호)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	211	영랑 149-2대 대로3-4	영랑 162-7도 중로1-2	일반 도로	1969.3.25 (강고제2119호)	
기정	소로	1	68	10	국지도	202	장사 592-38도 대로3-4	장사 640-7도 소로1-23	일반 도로	1999.3.3 (속고제99-6호)	
변경	소로	1	68	10	국지도	202	장사 592-38도 대로3-4	장사 640-7도 소로1-23	일반 도로	1999.3.3 (속고제99-6호)	

구분	규모				가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최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9	8	국 지 도 로	200	대포 839-26도 중로1-5	대포 797-3대 소로3-165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변경	소로	2	109	8	국 지 도 로	200	대포 839-26도 중로1-5	대포 797-3대 소로3-165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기정	소로	2	179	8	국 지 도 로	1,293	노학 1279도 중로2-23	노학 1184도 대로3-1	일반 도로	1993.4.28 (속고제93-11호)	
변경	소로	2	179	8	국 지 도 로	1,293	노학 1279도 중로2-23	노학 1184도 대로3-1	일반 도로	1993.4.28 (속고제93-11호)	
기정	소로	3	53	6	국 지 도 로	297	교동 901도 소로1-78	교동 628-204잡 소로3-275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변경	소로	3	53	6	국 지 도 로	297	교동 901도 소로1-78	교동 628-204잡 소로3-275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기정	소로	3	83	6	국 지 도 로	215	금호 622-253잡 소로1-75	금호 628도 중로1-1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변경	소로	3	83	6	국 지 도 로	220	중앙 509-9도 소로1-75	금호 628도 중로1-1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기정	소로	3	147	6	국 지 도 로	255	조양 1484-8대 대로1-2	조양 1464-14잡 중로1-25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변경	소로	3	147	6	국 지 도 로	255	조양 1484-8대 대로1-2	조양 1464-14잡 중로1-25	일반 도로	1977.4.19 (강고제77-72호)	

□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1-4	중로1-4	• 선형변경 • 종점 지번 변경	•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지적선에 맞춰 선형변경 • 토지합병으로 인한 종점 지번 변경
변경	중로1-16	중로1-16	• 선형변경 • 기점·종점 지번 변경	•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지적선에 맞춰 선형변경 • 토지합병으로 인한 기점·종점 지번 변경
변경	중로3-52	중로3-64	• 시설명 변경 • 기점 지번 변경	• 속초시고시 제2011-25호로 결정된 중로3-52호선 과 도로시설번호가 중복으로 결정되어 변경 • 토지합병으로 인한 기점 지번 변경
변경	중로3-61	중로3-61	• 선형변경 • 연장 : 694m → 714m (증)20m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연결된 도로 선형변경
변경	소로1-1	소로1-1	•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로 인해 변경된 대로3-4의 선형에 맞춰 도로 선형변경
변경	소로1-68	소로1-68	• 선형변경	• 기 개설되었으나, 폐지된 시설에 의해 단절된 도로 로 현황에 맞춰 선형변경
변경	소로2-109	소로2-109	• 선형변경	• 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선형변경
변경	소로2-179	소로2-179	• 선형변경	• 기 개설되었으나, 폐지된 시설에 의해 단절된 도로 로 현황에 맞춰 선형변경
변경	소로3-53	소로3-53	• 선형변경	• 지적불부합(학교(6)과 소로3-53호선 중복결정)에 따른 선형변경
변경	소로3-83	소로3-83	• 선형변경 • 연장 : 215m → 220m (증)5m • 기점 지번 변경	•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현황도로에 맞춰 선형변 경 • 토지합병으로 인한 기점 지번 변경
변경	소로3-147	소로3-147	• 선형변경	• KLIS상 연결이 단절된 도로로, 선형변경 후 KLIS 재등재

나. 공간 시설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유원지	척산온천유원지	노학동 972-1 일원	211,116	증) 1,993	213,109	2007.11.2 (강고제2007-236호)	-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5	유원지	• 면적 : 211,116m ² → 213,109m ² (증 1,993 m ²)	• 기 결정된 시설로, 조서 및 도면 누락에 따른 반영

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3	공공공지	조양동 1219-7 일원	901	-	901	2016.6.17. (속고제2016-30호)	-

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3	공공공지	• 시설명 변경: 공공공지12 → 공공공지13	• 도면표시번호 중복으로 인하여 도면표시번호 변경

다. 공공문화체육 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	유치원	교동 966-7	881.9	-	881.9	1990.11.12 (강고제1990-131호)	-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20	유치원	• 도면표시번호: 1 → 20	• 시설번호 중복으로 인한 변경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공공청사	조양동 산40-3	1,700	-	1,700	2018.2.9. (강고제2018-48호)	-

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0	공공청사	• 시설명 변경 : 선거관리위원회 → 공공청사 • 도면표시번호 : 1 → 10	• 시설번호 중복으로 인한 변경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체육시설1	대포동 242일원	41,347	-	41,347	2018.2.12. (속고 제2018-15호)	-
변경	4	체육시설2	도문동 1725일원	15,968	-	15,968	2018.2.12. (속고 제2018-15호)	-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3	체육시설1	• 도면표시번호 : 1 → 3	• 시설번호 중복으로 인한 변경
변경	4	체육시설2	• 도면표시번호 : 2 → 4	• 시설번호 중복으로 인한 변경

라.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수질오염방지시설	대포동 972	8,018.9	증) 297	8,315.9	2011.5.3. (속고 제2011-25호)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중말처리시설)	• 위치 : 대포동982 → 대포동972 • 면적 : 8,018.9m ² → 8,315.9m ² 증) 297m ²	• 시설의 위치 및 면적 오기 정정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0. 8.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10. 8. ~ 2021. 10. 22.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1.09.30.)	주○석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34-80	건축물 미존재	청학동 634-42	흙벽돌 주택 31.68㎡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1.09.30.)	김○남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3-15	건축물 미존재	청학동 634-42	흙벽돌조 주택 14.4㎡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1.09.30.)	백○기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산190	건축물 미존재	청학동 634-42	목조 주택 61.06㎡

4.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033-63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 7. 13.자로 시행됨에 따라 위임규정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2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및 공모 절차(안 제3조 ~ 4조)
- 교부 결정 취소(안 제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부기등기(안 제6조 ~ 제7조)
-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안 제8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9조 ~ 제19조)
-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안 제2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7.(수)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예산과(예산팀)
- 팩 스 : 033-639-2106
- 전자우편 : jh921102@korea.kr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033-639-22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예산(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포함한다) 성립 이후 공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

문을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

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 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 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

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② 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 속초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속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중요재산 현황 보고서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 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 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 기간(일자)					
소유자 구분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¹⁾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 건 ¹⁾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 담당 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